

[별표 4] <개정 2017. 8. 16.>

**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**(제18조제2항 관련)

구분	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	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
심사 경력	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3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	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각각 1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·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
학력 · 유사 경력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,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</li> <li>나.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</li> </ul> </li> <li>2. 대학·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,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</li> <li>나.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</li> </ul> </li> <li>2. 대학·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
	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	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교육 경력	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 1. 「국제안전관리규약」 및 이 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: 8시간 2.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·선박안전기술공단·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: 8시간 3.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: 8시간 4. 안전관리의 기술적·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: 16시간 5.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지식: 40시간	

비고

1.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심사경력, 학력·유사경력 및 교육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2.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.
3.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.
4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하고, 제5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.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.
  - 가. 「국제안전관리규약」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: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교육
  - 나.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: 제2호에 관한 교육
  - 다.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: 제5호에 관한 교육
6.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·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교육경력의 제1호 및 제3호를 내용으로 하는 8

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,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·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7.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·기관·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)의 정회원인 법인·기관·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·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「국제안전관리규약」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